

질식사고 위험업무 발주·용역시 필수 확인사항



1 적격 업체 선정이 필요한 이유

- ✓ 공사, 용역 등 도급사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.
- ✓ 맨홀, 오폐수처리시설, 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시 질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
 - 1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,
 - 2 안전하게 작업토록 전문인력이 작업을 관리하여야 하며,
 - 3 작업시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업체를 반드시 선정토록 합니다.

2 입찰시 반영사항

- ✓ 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공고문, 과업지시서, 지방서에 다음과 같은 참가자격 제한, 안전조치 이행, 안전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합니다.

1 입찰공고문

참가자격 ▶ 계약상대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.



장비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장비보유

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

2 환기장치 (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)

3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



인력

- 1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기관에서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한 자

☎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edu.kosha.or.kr 에서 이러닝 등 교육 가능

2 과업지시서

안전조치

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,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.

1 현장 사전준비	질식사고 예방장비 준비, 법적 경고표지 게시
2 산소·유해가스 농도 측정	측정기 지급,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기록
3 작업 개시	환기장치, 공기호흡기(또는 송기마스크) 비치, 적정공기 여부 확인
4 강제 환기	작업 전·중 환기팬을 이용한 환기
5 감시인	감시인 배치, 비상시 119 신고, 안전장비 없이 구조 불가
6 작업 허가	발주처가 당일 작업 전 작업 조건이 적정시 허가
7 교육	발주처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 확인

3 시방서

안전관리 ▶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

-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목록화
-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
-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-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후속조치 사항
-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작업전 안전 조치

- 출입금지 표지 게시
-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지급
- 공기상태 측정자 지정 및 측정(기록 보관)
- 작업 전,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
- 삼각대, 송기마스크(공기호흡기) 등 장비 확보

작업 중 안전관리

- 감시인 배치
- 작업자와 감시인간 연락체계 구축
- 입장과 퇴장시 인원점검

사고발생시 조치

- 사고 발생시 119(소방서) 먼저 신고
- 긴급연락망에 따라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
- 재해자 구조시 공기호흡기 등 착용

3 질식사고 예방 필수안전수칙

① 측정

작업 전·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
② 환기

기계식 환기장치로 작업 전·중 강제환기

③ 보호구

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·착용

④ 119

사고 시 119 먼저 신고 (안전장비 없이 구조금지)

4 질식사고 예방 장비

가스농도 측정기



공기호흡기



송기마스크



환기팬



삼각대



안전대



구조용사다리



섬유로프



🔊 밀폐공간 작업 시 장비가 없다면 ☎ 1644-8595 전화하면 장비 무료 대여가능